

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이유서

의안번호	162
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3. 2. 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(대통령령 제13786호, '92. 12. 26)에 따른 사하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보건소장의 직급 명칭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직급 명칭 변경(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과 동일)

대 상	현 행	개 정
보건 소장의 직급 명칭	지방 의무기정 지방 보건기정 또는 지방 보건기좌	지방 의무서기관 지방 보건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사무관

3. 관계법령
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및 제3조